

#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1.

발의자 : 정태호 · 최혜영 · 이학영

김주영 · 홍성국 · 최인호

양기대 · 전용기 · 윤영덕

홍정민 · 설훈 · 박상혁

김종민 · 신현영 · 조오섭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의 보험목적물 소유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, 산사태취약지역,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,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건축물·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풍수해,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어 법률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,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

려는 것임(안 제23조제2항제4호 신설).

##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 
방재지구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보험가입의 촉진 등) ① (생 략)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23조(보험가입의 촉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 <u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